

양양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

양양군체육회

양양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 02. 26.
일부개정 2025. 02. 06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양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장과 제 5장의 직원의 채용 및 승진, 상벌 관련 내용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며, 양양군체육회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 적) 본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양양군 체육회 사무국 직원과 체육지도자에 적용된다.

제4조(구 성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체육회 부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과장 중에 임명한다.

제5조(직 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직원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
4.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5.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6.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요청한 사항

7. 인사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8. 양양군 체육인의밤 수상자 및 대내외 표창자 선정

제6조(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도 의결에 참가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③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,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제척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신에 관한 인사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② 전항에 의하여 인사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심의내용의 비밀엄수)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참가한 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진술권의 부여)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할 수 있다.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1조(심 의)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사항은 이사회에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규정) 본 규정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양양군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할수 있다..
2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